

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3판)(‘20.3.27 시행)과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20.3.12 시행), 생활속거리두기 지침(‘20.5.6 시행)에 근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 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20.3.30 시행)을 수정·보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5판)

2020. 5. 8.



보건복지부

목 차

I. 개 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2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2
3. 시설 입소·출입시 관리 강화	3
4. 접촉의 최소화: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취소	5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사항	5
6.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6
7. 행정사항	7
III. 이용시설 운영 재개 준비 등	7
IV. 지자체 협조사항	7
▷ 붙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8
2. 감염병 예방수칙	10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11
4.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12
5.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6. 사회복지시설 소독안내(요약)	15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17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	18
▷ 서 식 ◁	
1. [서식1]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19
2. [서식1-1 예시] 접촉자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20
3. [서식2] 접촉자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21
4. [서식3-1 예시1]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22
5. [서식3-2 예시2]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23
6. [서식4]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체크리스트	24
7. [서식5]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25
▷ 참 고 ◁	
1. 사회복지시설 종류	26

I 개 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속 시행, 감염차단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5.6)

○ 이에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2. 기본방향

- ☐ 다수인이 이용(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 * 「위생·청소/소독/환기·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 주소, 연락처,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붙임 1~5]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1)+(2):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 (3)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시설 입소자의 면회 · 외출 · 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 * 면회, 외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면회 허용시기는 시설별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정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시설별로 면회 수칙 등 별도 마련 · 운영
 - * 노인요양시설 면회 허용 시기 및 수칙 등은 추후 별도 시행
 - 외출은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 · 운영
- 이용자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 자원봉사자 ·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서식 3)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4. 접촉의 최소화: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출 · 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 집단 행사, 집합교육, 국외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소규모회의, 국내출장 등 가능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유지 방안 마련 · 운영
 -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지침」(20. 2. 21. 既 배포)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1(2020.02.21.) 既 시행

6.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7. 행정사항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시달)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Ⅲ 이용시설 운영 재개 준비 등

- ☐ (운영 재개 시점 등) ① 각 시설별 운영재개 사전준비사항(별도 안내 예정)에 따른 약 2주간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② 지자체별로 개별시설의 사전준비사항 점진 종료 후 운영 재개 시점 판단(결정)
 - (운영 재개 前) 시설 휴관(원) 시 조치(Ⅱ-5) 사항에 따라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 (운영 재개 後) 시설별로 이용수칙 및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운영
- ☐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시설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점검으로 진행
 - * 시설 자체점검('20.5.11.~5.29.) 실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완료

Ⅳ 지자체 협조사항

-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필요

- (건강관리책임자) 시설내 건강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조치 필요
- (연락체계 구축) 시설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 (격리시설 마련)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1인실 원칙)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발열체크 등 확인)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및 방문자 등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기록하도록 조치 필요
- (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특히, 이용시설 운영재개 전 시설별 사전준비사항 점검 실시
-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I.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II.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III.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발행일 :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 일상 소독 방법 (예) 】

1.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소독 부위 예시

-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2.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3.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환자발생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예) 】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안내(2-1판 참조))
3.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시트, 덮개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신고 대상 >

- (확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 (조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붙임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일 (평균 4~7일)
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p><환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p><접촉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 없음 올바른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서식1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	14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	종료일
예시 000	체온 ℃	오전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오후 38°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란	✓	✓	✓											
	④ 객담	✓					✓					✓			
	⑤ 기타		설사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 접촉되지 않은 입소자 및 종사자이므로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

서식1-1

시설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예시)

[illegible]

서식2

접촉자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예시 000	체온 ℃	오전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오후	38°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란	√	√	√											
	④ 객담	√					√					√			
	⑤ 기타		설사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 예시 (1)

[illegible]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직접 체온계로 측정(측정하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며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 예시 (2)

[illegible]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 · 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 **시 설 명:** ()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 (1)				
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준수사항 (8)				
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직위: 성명: 연락처:
2.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2.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 (※ 생활시설만 해당)				
2.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2.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 생활시설 : 격리실)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서식5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사회복지시설 명 : _____

감사 항목	내용 확인	적합성	부적합	증거 정보
1.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요양보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올바른 손 위생을 따르고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포함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을 수행하며 점검 체계가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요양보호사는 관리 기간 동안 입소자를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출석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고 입소자의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 명단 확보 및 보관 해야 합니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 출입 시간이 있으며, 출입 기간 동안에는 입소자를 봉사서비스를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된 자원봉사자만 출입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간 (예 : 아침, 정오 및 저녁)을 설정합니다. 각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자원봉사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방문시간을 포함한 기록 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기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 및 기침 예절을 시행해야합니다.			
3. 요양보호사의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전담 직원은 요양보호사를 위해 매일 온도를 측정하고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감염과 같은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적 인 추적 및 조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4. 요양보호사 감염 관리 교육	손 위생, 기침예절, 개인 보호구 사용, 환경 및 소독 및 기타 관리 조치를 포함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을 합니다.			

* 입소자와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모두 포함

검사관 서명 : _____ 검사 날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참고

사회복지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치료시설 쭈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센터 청소년치료재활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